

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사료공장 지정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 (대표자)	성명	생년월일	
	주소	전화번호	
신청 내용	제조업체명		전화번호
	제조업등록번호		제조업등록 연월일
	소재지		
	관리책임자		생산능력(1일 생산량)
	생산사료	양축용 배합사료([]고기소 []젓소 []돼지 []닭 []개 []말 []면양·산양 []사슴 []오리 []칠면조 []토끼 []메추리 []꿩 []오소리 []타조), []농가 자가배합사료 원료, []프리믹스용 배합사료, []대용유용 배합사료, []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, 그 밖의 동물·어류용 배합사료([]실험용 동물 []애완용 동물 []사육하는 동물 []어류), []단미사료, []보조사료	

「사료관리법」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 사료공장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사료공장의 위해요소중점관리 담당기관의 장 귀하

첨부서류	1. 제조업등록증 사본 2. 대표자 또는 종업원의 교육·훈련 수료증 사본 3. 삭제 <2023. 3. 23.> 4.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 5.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6. 1개월 이상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실적 사본	수수료 「사료관리법」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른 수수료
------	---	---

